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선물하는 내용의 국기 보급 사업 추진과 가로기 게양 규정 등의 신설을 포함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영등포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보다 드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 가로기 정의 및 게양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
- 국기 무상 보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는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고, 국기 게양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가로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안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에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가로기의 게양)에는 가로기 게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4.2.27. 제정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국기 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기 게양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는 국기에 "가로기"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가로기에 대한 정의와 가로기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제10조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단체의 장에게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기준 우리 구(區)의 대략적인 혼인신고자 건수는 약 1,500명이고, 국기 비용은 약 6,500원으로 9,750천원 가량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344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최봉희、임헌호、김지연

유승용 \이성수 \ 우경란 의원

(6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선물하는 내용의 국기 보급 사업 추진과 가로기 게양 규정 등의 신설을 포함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영등포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보다 드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 다. 가로기 정의 및 게양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
- 라. 국기 무상 보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5. 22. ~ 5. 26.)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로, "태극기에 대한"을 "대극기의"로,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을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기 선양"이란"을 ""국기선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기 선양"을 "국기선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1회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	제1조(목적)
국국기법」에 따라 <u>구민이</u> 우리	<u>서울특별시 영</u>
나라 국기인 <u>태극기에 대한</u> 중	<u>등포구민에게</u>
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	태극기의
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
<u>사업을 지원하는</u> 것을 목적으로	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한다.	<u>사항을 규정하는</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국기 선양"이란</u> 국기에 대한	2. <u>"국기선양"이란</u>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u><신 설></u>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u>국기 선양</u>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② (생략)

<u><신 설></u>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 함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u>동 주민센터</u>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u>국기선양</u>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
<u>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u>
우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
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
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u>내인 사람</u>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
함의 설치·운영) ①
<u>동주민센터</u> -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u>동 주민센터</u>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9조 (생 략)

2	
<u>동주민센터</u>	

제8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 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 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 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 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u>제9조·제10조</u> (현행 제8조 및 제 9조와 같음)